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 미 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금오산도립공원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42만 구미시민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현대 사회의 트렌드이자 정부의 핵심 농정혁신과제인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구미시 먹거리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맹지가 되는 잔여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피해 감소를 위해 매입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공영화물 차고지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잔여지 매입 취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금오산도립공원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 위 치 : 구미시 남통동 163-1 외 2필지 * 토지 시유지
- 대 상 : 건물 연면적 600㎡(182평)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 업 비 : 17억원(국비 5, 도비 1.5, 시비 10.5)
- 주요시설 : 판매장, 편의시설, 사무실, 작업장 등

【취득 취소재산】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 위 치 : 오태동 산 27-3번지
- 대 상 :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4,837㎡(7,513평)
- 기준가격 : 288백만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남구미 IC 인근)
- 기 간 : 2014 ~ 2021년
- 사 업 량 : 43,213㎡
- 사 업 비 : 194억원(국비 136, 시비 58)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2건	600	1,700
	1.매입	당초	토지 건물 기타		24,837	288
		취소	토지 건물 기타	1건	-24,837	-288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600	1,70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취소)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취소)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합계			600	1,700				
소계			600	1,700				
취득	토지	당초	오태동 산 27-3	24,837	288	2019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인동장씨 남산파종증 226회 임시회 원안가결 (18.10.31)
		취소	"	-24,837	-288	2020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불가로 사업취소	- 매입 취소
	건물		남통동 163-1 외 2필지	600	1,700	2020~ 2021년	금오산도립공원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구미시 신축
소계								
처분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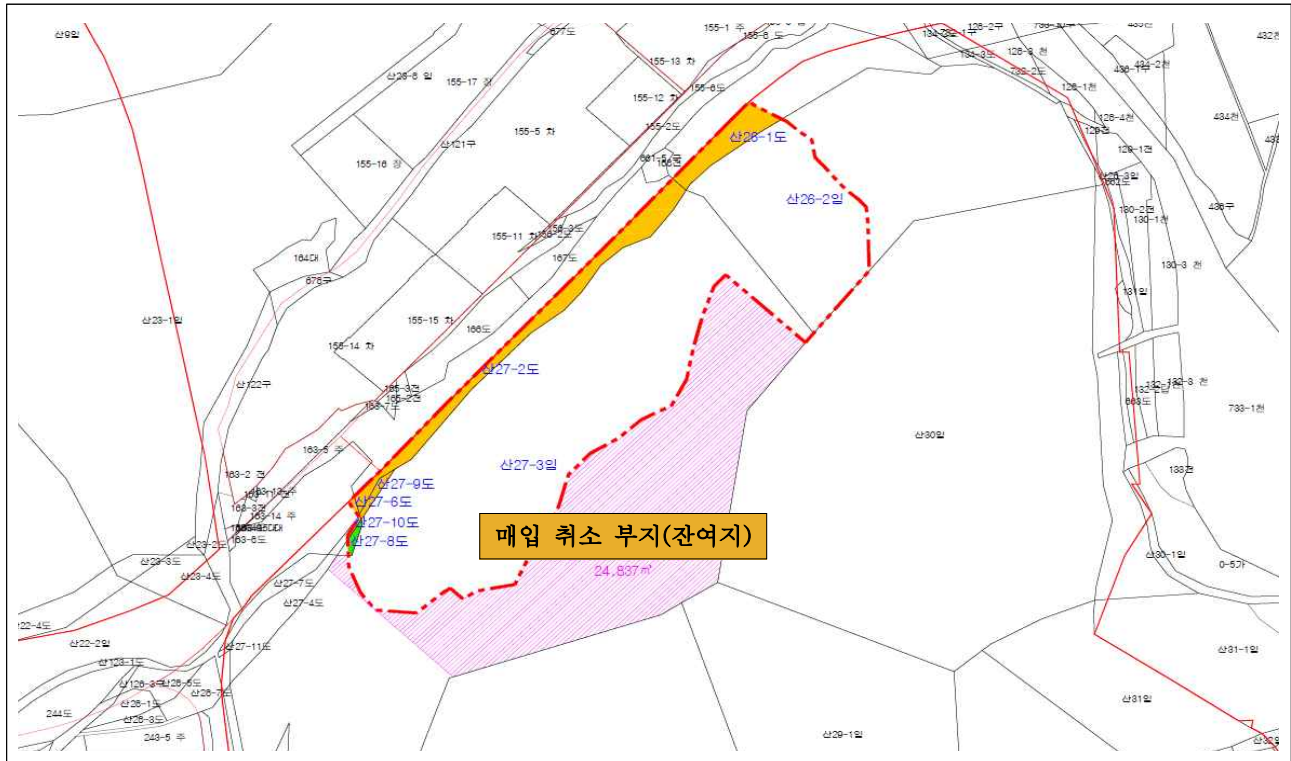
□ 금오산도립공원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 소재지 : 구미시 남통동 163-1번지 외 2필지(금오산도립공원 일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취소

○ 소재지 :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지 영 목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황 경 아 (480-5072)